

「2025년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Q&A

Q. 아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아산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보장항목 및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이시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 기존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물림치료비의 경우 배상책임여부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Q.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을 보장받을 수 없나요?

A.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Q. 보험기간 중간에 아산시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아산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 아산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담보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장이 됩니다

Q. 4주 미만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진단위로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상해진단위로금은 최초 4주이상 진단시 청구가 가능하며, 4주이상 입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는 어떤 걸 말하나요?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승객으로써)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A.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담보에서는 택시와 전세버스 제외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라 함은?

-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Q.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무엇인가요?

- A.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Q.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무엇인가요?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A.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